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관련 연접의 의미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의 연접의 의미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이고, 농지의 소유자는 전남 목포시 (옥암동) 에 거주할 경우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해당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구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 · 면 (도농복합형 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또는 읍 · 면

질의하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연접” 은 해당 행정구역이 직접 접한 경우 (읍 · 면 지역은 연접한 읍 · 면) 를 말하며,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농지의 행정구역과 소유자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연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10.15. 토지정책과-4785]